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3. 8. 26.

발 의 자: 권성동 · 김성태 · 강기윤
김한표 · 노철래 · 이강후
이이재 · 유재중 · 정문헌
김재경 · 최봉홍 · 김을동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, 인사청문의 실시기간이 짧고 인사청문을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불충분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인사청문을 윤리성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, 인사청문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,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).
- 나.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,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).
- 다.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(안 제6조제2항).
- 라.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- 마.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.
- 바.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

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54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”를 “국회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인사청문특별위원회, 소관상임위원회”를 “소관상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인사청문회는 병역사항, 범죄경력 및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한다. 이 경우 제1차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제2차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 및 업무능력 검증을 위하여 검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

7.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

제6조제2항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 기간을 30일에 합산한 기간 이내에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질의시간은”을 “질의시간과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화상 증언·감정·진술을 실시할 수 있다. 화상 증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, “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”를 “제1인사청문회와 제2인사청문회의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의”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

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본문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인사청문회는”을 “제2차인사청문회는”으로 한다.

① 제1차인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해임 등 건의) 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·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

②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·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등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6항 중 “제4조제2항”을 “제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국회의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<u>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(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)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② <u>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선임 및 개선(改選)한다. 이 경우 각 교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국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4조(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)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,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「국회법」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, 공직후보자를 출

제4조(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) ① 소관상임위원회-

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

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-----.

② 인사청문회는 병역사항, 범죄경력 및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한다. 이 경우 제1차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제2차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 및 업무능력 검증을 위하여 검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

①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(생 략)

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③·④ (생 략)

제7조(위원의 질의등) ①·② (생 략)

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~ ⑦ (생 략)

제8조(증인등의 출석요구등) (생 략)

<신 설>

7.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30일-----

- 다만,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 기간을 30일에 합산한 기간 이내에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의 질의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질의시간과 공직 후보자의 답변시간-----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증인등의 출석요구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

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화상 증언·감정·진술을 실시할 수 있다. 화상 증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등)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,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.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등) ① -

-----25일-----
-----제1인사청문회와 제2인사청문회의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-----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제19조(준용규정) (생략)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해임 등 건의) 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·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

②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·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20조(준용규정) (현행 제19조와 같음)